

재활보조기구 지급 관련 질의내용 검토

1. 질의배경

- 재활공학연구소는 '06.3월부터 재활보조기구(욕창예방매트리스 등 6종)를 구매하여 인천중앙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산재환자에게 공급하고 동 비용을 인천중앙병원 진료비에 포함하여 경인지역본부에 청구(요양급여산정기준 고시가로 청구)

※ 재활보조기구 청구내역 : '06.3월, 4월, 5월, 8월분 (335,440천원)

- 경인지역본부는 진료비 심사시 동 연구소에서 구매한 가격을 조사한 후 구매가격이 고시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자 동 차액분을 삭감조치

※ 재활보조기구 삭감액 : 90,643천원(욕창예방매트리스가 87,880천원으로 삭감액의 97%를 차지)

- '06.12월 인천중앙병원은 연구소의 구매가격에 산재환자에게 판매시까지 소요된 제반경비 및 이윤 등을 계상하여 새로운 거래실례가격을 산정 재청구하였으나 경인지역본부는 재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반려

※ 재청구 금액 : 구매가격에 소요비용 24,136,500원을 계상하여 청구

- 이에 산재의료관리원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구입한 제품의 원가에 매입관리, 납품 등에 소요된 제반경비와 이윤을 계상하여 인천중앙병원에 공급하여 공단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청구가 가능할 경우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2. 관련규정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 제10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3. 재활공학연구소의 업무개요

가. 업무범위 (재활공학연구소운영지침)

- 제3조(업무) : 연구소는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재활공학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장애인 재활을 위한 각종 재활기기 및 치료, 훈련기술의 연구·개발 ② 산재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공급 및 관련 재활치료·훈련의 제공 ③ 재활기기의 기술 및 제품 표준화를 위한 시험검정 및 의지·보조기기사 실무교육과 양성 ④ 국내 관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정보 교류 및 협력 등 기타 종합연구·개발업무의 수행
- 제20조(제작·공급절차) ① 제작실장은 의사처방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작·공급하며, 제작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불각서 징구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 서비스업, 종목 : 보장구연구, 제작·판매

나. 재활보조기구 판매 및 비용청구 절차

- 재활보조기구를 자체 제작하거나 입찰을 거쳐 완제품을 구매하여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공급하면서 동 비용은 환자들로부터 요양급여산정기준 고시가격으로 징수
- 그러나 인천중앙병원의 환자인 경우에는 주치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우선 지급한 후 동 비용의 청구는 인천중앙병원의 진료비에 포함하여 공단에 청구(재활보조기구 판매수익은 연구소 회계로 처리)

※ 산재환자가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동 비용을 공단에 이종요양비로 청구할 경우 환자에 대한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과 청구절차상 번거로움 등 민원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활공학연구소를 대리하여 인천중앙병원이 청구를 대행하였고 경인지역본부에서도 이를 심사 지급

다. 재활공학연구소 재활보조기구 공급 사례

구분	치방의료기관명 (보험재정)	환자명 (치방일)	품목	판매가	판매가 산출내역				
					합계	구입원가 (재료대)	인건비	일반관리 비	이윤
제작품	울진의료원 (의보)	이원희 (‘06. 10.2)	손목관절 의지	450,000	433,122	236,570	151,000	27,684	17,868
"	상주직접자병원 (건보)	김종연 (‘06.10.10)	넓적다리 의지	1,560,000	1,274,309	779,520	362,400	87,408	44,981
완제품	인천제일의원 (자보)	장경예 (‘06.7.19)	나이트식 하리보조기	136,000	129,717	40,000	75,500	6,061	8,156
"	(건보)	박종석 (‘06. 1.3)	활동형 휠체어	638,000	709,692	600,000	66,400	33,320	9,972
"	(일반)	박성만 (‘06. 3.24)	활동형 휠체어	638,000	709,692	600,000	66,400	33,320	9,972
"	(일반)	유원목 (‘06. 5.9)	욕창예방 방석	250,000	252,509	198,000	36,765	11,788	4,955
"	(건보)	최종순 (‘06. 6.16)	욕창예방 방석	250,000	252,509	198,000	36,765	11,788	4,955
"	(의료보호)	한동희 (‘06. 9.21)	욕창예방 방석	250,000	252,509	198,000	36,765	11,788	4,955
"	(일반)	김민태 (‘06.11.21)	집노기	57,000	59,819	47,000	8,861	2,793	1,165

4.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지급현황

가. 품목별 지급현황

(단위 : 명, 천원, 건)

품목명	고시가격	수급자수	청구액	지급액	조정액
계		4,931	2,856,870	2,590,433	266,437
욕창예방매트리스	1,850	790	1,429,000	1,337,800	91,390
욕창예방방석	250	2,034	541,653	507,613	34,040
집노기	57	356	20,923	19,327	1,596
휠체어	480	914	529,164	435,905	93,260
전동휠체어	2,090	140	325,064	280,780	44,284
목발	150	673	11,066	9,458	1,608

나. 청구금액별 구분

(단위 : 원, 건, %)

품목명	수급자수	청구금액별 구분			
		고시가격 또는 고시가격 이상	비율	고시가격이하	비율
계	4,931	3,982	80.8	949	19.2
육창예방매트리스	790	779	98.6	11	1.4
육창예방방석	2,034	1,849	90.9	185	9.1
집뇨기	356	302	84.8	63	15.2
혈채어	938	598	63.8	340	36.2
전동혈채어	140	111	79.3	29	20.7
목발	673	343	51	330	49

- 인천중앙병원 재활보조기구 삭감액중 육창예방매트리스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 '06년 육창예방매트리스를 고시가격으로 지급한 건수는 전체의 98.6%임

5. 질의에 대한 검토

가. 쟁점사항

-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제10조제1항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산재 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활공학연구소가 재활보조기구를 인천중앙병원에 납품하고 인천중앙병원은 동 비용을 연구소에 지급하는 등의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천중앙병원에서 연구소로부터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본 건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환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공급하였고 단지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연구소를 대리하여 인천중앙병원에서 진료비로 청구한 것임

- 따라서 본 질의의 쟁점은 연구소에서 인천중앙병원의 환자에게 공급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소 구입가격으로 산정할 것인지, 구입가격에 환자에게 판매하기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

※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담당의료기관이 아닌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판매 기관임

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재활공학연구소는 국가출연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연구기관으로 각종 재활기기, 훈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재장해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실태가 보장구 연구 및 제작·판매 하는 사업장으로 이윤추구 보다는 산재장해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 개발·공급이 목적

◇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 방법

- 재활보조기구를 자체 제작하여 산재환자에게 공급
 - 제품의 제작원가에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판매
- 외부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 구매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경비 및 이윤 등을 계상하여 판매

- 산재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도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매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품을 구매하여 환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까지 인건비, 보관비, 운반비 등 제반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
- 따라서 재활보조기구 지급비용의 산정은 구매가격에 구매 및 공급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재활공학연구소의 설립취지로 볼 때 이윤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

6. 결론

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공급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비용의 산정

- ‘06년 요양비지급현황으로 볼 때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98.6%가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고시가격으로 지급하였는 바,
 - 재활공학연구소가 자체 입찰을 거쳐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였고, 연구소에서 제품을 환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인건비, 보관비, 운반비 등 제반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구매가격에 동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 동 제반비용은 환자의 거주지 또는 판매까지 소요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생되므로 매 판매시 마다 소요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곤란
 - 따라서 재정경제부에서 작성한 “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 04-160-3, ‘06.12.29)” 제4절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제28조(일반관리비 등)의 규정을 준용
 - 동 소요비용은 ‘06년도 구매가격에 5%를 계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 노동부에서 ‘07년도에 고시될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욕창예방매트리스에 대한 가격결정도 재활공학연구소 납품단가에 일반관리비 5%를 계상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결정

◇ ‘07년 고시예정인 재활보조기구 수가 산출근거

(단위 : 원)

품 명	연구소 납품단가	일반관리비(5%)	합계 (고시가)
욕창예방매트리스	1,380,000	69,000	1,449,000
활동형휠체어	720,000	36,000	756,000

□ 전문가 의견

○ 김광덕 변호사

- 재활공학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업무, 재활보조기구 제작·판매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주장하는 제반비용과 이윤 모두 비용 산정은 곤란

- 따라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5%를 계상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이세현 자문위원

- 과거 산재보험 자체수가 적용시에도 자체 제조한 약품의 경우 생산원가에 10%를 가산하여 약대를 산정한 적이 있었는 바,
-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 이익금 등을 매출액 외형에 10%를 계상하는 점과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을 고려할 때 구매가격의 5%~10%범위내에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재활보조기구 산정금액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 진료비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 처분결정이 행하여진 이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구제절차인 진료비이의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그러나 본건은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재활보조기구 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단간의 상호간 논란이 있었으며, 당시 경인지역본부의 진료비 삭감결정에 대하여 인천중앙병원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행하려고 하였으나 추후 본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결정기로 이의신청을 보류하였고,
- 금번 질의와 관련 재활보조기구 산정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

□ 전문가 의견

○ 김광덕 변호사

-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을 유보토록 하였으므로 신뢰보호 견지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 이세현 자문위원

- 원처분청의 언질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보류된 것이며, 문제가 된 비용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소급적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

첨부 : 1. 재활보조기구 청구관련 질의회시 요청 공문 1부.

2. 기타 관련근거 1부. 끝.